



시 보



제1728호 2026. 2. 2. (월)

공 고

-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 2026년 건강행태개선사업(운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6.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
- 지급 조건인 출생신고시부터 부모 모두 도내 거주 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입하지 않고 출생아동의 출생신고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보완 필요

2. 주요 내용

-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보호자(부모 모두)의 도내 거주 조건 충족 시기 조정(안 제4조 제2항)
- (현행) 출생신고시부터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 주소

(개정) 출생신고시에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 도내 주소 지급신청일부터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 주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 2026. 1. 26. ~ 2026. 2. 15. [20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5일까지 목포시장(청년인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안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791),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청년인구과(☎061-270-8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생기본수당”이란”을 ““출생기본소득”이란”으로, “지급하는 수당을”을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로 한다.

제3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의”를 “소득의”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신청일부터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생기본수당을”을 “출생기본소득을”로,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생기본수당 소급”을 “출생기본소득 소급”으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출생기본소득 지급”으로, “출생기본수당을”을 “출생기본소득을”로 한다.

제8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출생기본수당의”를 “출생기본소득의”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출생기본소득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10조 중 “수당의 반환”을 “소득의 반환”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3호까지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u>	<u>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 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출생기본 수당</u>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출생기본수당</u>”이란 제4조 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u>지급하는 수당</u>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 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 다. 가. (생 략) 나. (생 략) 3.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u>출생기본수당</u> 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제1조(목적) ----- ----- ----- <u>출생기본소득</u>----- ----- -----. 제2조(정의) ----- -----. 1. “<u>출생기본소득</u>”이란 ----- ----- <u>개별적이며,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u>를 ---.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 <u>출생기본소득</u>----- ----- -----.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
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
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
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
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
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

제4조(지급대상) ① -----

----- 출생기본소득 -----
-----.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부터 출생아동과 모든 보
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
-----소득의 -----

----- 출생기본소득 -----
-----.

④ -----

동이 목포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출생기본소득 -----
-----.

제5조(지급내용) ① -----
출생기본소득 -----

-----출생기본
소득 -----.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
----- 출생기본소득 신청서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출생기본
소득 -----.

⑤ -----
----- 출생기본소득 -----

-----.

게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사업 시행 후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③ -----출생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

④ -----

-----출생기본소득 소급 -----

-----출생기본소득 지급 -----

-----출생기본소득을 -----
-----.

제8조(성과평가) -----
----- 출생기본소득 -----

-----.
----- 출생기본소득 -----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출생기본소득의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

출생
기본소득 지급 -----
-----.

② -----
-----.

1. ----- 출생기본소득 -----
2. ----- 출생기본소득 -----
3. ----- 출생기본소득 -----
4. ----- 출생기본소득 -----

제10조(소득의 반환) -----

----- 출생기본소득 -----
-----.

1. -----출생기본소득 -----
----- 출생기본소득 -----
2. ----- 출생기

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출생
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
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소득 -----

3. ----- 출생기본소득 -

제11조(개인정보 수집) ----- 출생
기본소득 -----

-----.

제12조(권한의 위임)-----출생기본
소득 -----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통반 세대수 · 관할면적 불균형 해소 및 공동주택 신설

2. 주요내용

- (조정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조정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市 전체	630	2,727	630	2,727	-	-	○통반 세대수 · 관할면적 불균형 해소 및 공동주택 신설
이로동	25	93	25	92	-	감1	○통반 세대수 · 관할면적 불균형 해소
부흥동	23	125	23	126	-	증1	○공동주택 신설

3. 규칙 개정안 : 별첨[붙임 1]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붙임 2]

5.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
-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및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입법예고기간 : 2026. 2. 2. ~ 2026. 2. 23. [22일간]

8. 사전협의(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칙 개정안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이로동·부흥동의 관할구역 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로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4	1	삼학로 347, 346, 346-1 삼학로 343번길 5, 6, 7, 15, 19, 5-1, 13, 13-1, 15-1, 14-1, 13-2, 11, 17, 17-1, 11-1, 7-2, 7-1, 21, 21-1 삼학로 341번길 4, 20, 14, 12, 12-1, 18-2, 16-1, 16, 18, 18-3 이로로 9번길 37
		2	이로로9번길 40, 42, 46 안장산로 51-2, 57, 51-1, 51, 49, 47, 45, 37, 43, 41, 39 안장산로21번길 26
		3	안장산로 35, 35-1, 29 안장산로21번길 7-1, 7-2, 9-1, 11, 11-1, 11-2, 11-3, 14, 13-1, 13-2, 13-3, 13-4, 17, 19, 19-1, 21, 25, 31
		4	안장산로 32-1, 38 안장산로40번길 4-7, 4-6, 4-5, 4-4, 4-3, 4-2, 4-1, 2, 3, 40, 44, 44-1, 5, 5-1, 5-2, 5-3, 9-1, 9
	5	1	이로로9번길 6, 8, 14, 18, 18-1, 18-2, 18-3, 18-4, 22, 20-2, 20, 20-1, 21, 25, 22-2, 22-3, 22-1 이로로 21, 25 삼학로373번길 23, 25, 27, 12, 12-1
		3	이로로 28, 28-2, 28-1, 28-3, 28-4, 28-5, 28-6, 28-7, 28-8, 28-9, 32-1, 32-2, 32, 34, 35 이로로34번길 2, 8-3, 8-2, 8-1, 8, 6-1, 6, 4, 4-1, 2-1, 1, 1-1, 3, 3-1, 3-2, 3-3, 5, 5-1, 7, 14, 16, 16-1
		4	이로로9번길 28-3, 28-1, 28-2, 28, 28-4 안장산로21번길 33(유창파크아파트)
	6	1	이로로4번길 10-1(영신빌리지) 이로로4번길 10(구. 용해아파트)
		2	이로로4번길 5, 3-2, 3-1, 3, 7 이로로 18, 18-1, 18-2, 14, 12, 10-3, 10-2, 10, 8, 6-1, 6, 5
		3	송림로 64, 66-1, 66, 66-2, 66-3, 68, 68-1, 70, 72, 74, 74-1, 74-2, 76, 65, 67, 67-1, 69, 73 영산로 360, 360-1, 362 이로로 2, 2-4, 2-6, 2-14, 2-13, 이로로4번길 2, 4, 4-1, 6
		4	이로로 3, 7 이로로9번길 3(이로초등학교) 송림로 82(팰리스빌)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7	1	송림로 77-2, 77-3, 79, 81 영산로 370-1, 37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1, 2라인)
		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3, 4라인)
		3	송림로 91, 91-1, 89, 91-2, 91-3, 91-4, 91-5, 91-6, 91-8, 91-7, 91-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3, 93-2, 95-1, 95-2
		4	송림로 97(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8	1	송림로 96, 98, 98-1, 98-2, 98-3, 98-4, 100, 100-1, 100-2, 100-3, 100-4, 100-5 삼학로373번길 16, 14, 12, 14-1, 6-3, 6-4 송림로104번길 12-1, 12, 10-3, 10-2, 10-1, 10, 8, 6, 4, 2, 3-3
		2	송림로 104, 104-1, 106, 108, 110, 112, 112-1, 114, 114-1, 114-2 송림로104번길 1, 3, 3-1, 3-2, 3-3, 6, 9, 11 삼학로373번길 6-1, 6-2, 6-3, 6-4, 10
		3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103, 104
		4	삼학로 388, 390, 386 쇼나루길 1, 4, 5, 5-1, 5-2, 7, 8, 8-1, 9, 11

□ 부흥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흥동	17	6	하당남부로 107 (옥암동, 하당원개솔오션파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이로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4	1	삼학로 347, 346 삼학로 343번길 6, 21, 5, 7, 15, 19, 5-1, 13, 13-1, 15-1, 14-1, 13-2, 11, 17, 17-1, 11-1, 7-2, 7-1 삼학로 341번길 4, 20, 14, 12, 12-1, 18-2, 16-1, 16, 18, 18-3 이로로 9번길 37	4	1	삼학로 347, 346, 346-1 삼학로 343번길 5, 6, 7, 15, 19, 5-1, 13, 13-1, 15-1, 14-1, 13-2, 11, 17, 17-1, 11-1, 7-2, 7-1, 21, 21-1 삼학로 341번길 4, 20, 14, 12, 12-1, 18-2, 16-1, 16, 18, 18-3 이로로 9번길 37
		2	삼학로 267번길 18-3 삼학로 275번길 16 용당로 100		2	이로로9번길 40, 42, 46 안장산로 51-2, 57, 51-1, 51, 49, 47, 45, 37, 43, 41, 39, 안장산로21번길 26
		3	이로로 9번길 40, 42 안장산로 21번길 26, 14, 31, 23, 13-3 안장산로 37, 39, 45, 57, 47, 43, 41, 44, 51-2, 51-1, 51, 44-2, 32, 32-1, 35, 35-1, 44-1 삼학로 343번길 21-1 안장산로 40번길 5-3, 22, 7, 9-1, 5-2, 5, 5-1, 3, 7, 2, 4, 32, 4-1, 4-2, 4-4, 4-3, 4-5, 4-6 용당로 138		3	안장산로 35, 35-1, 29 안장산로21번길 7-1, 7-2, 9-1, 11, 11-1, 11-2, 11-3, 14, 13-1, 13-2, 13-3, 13-4, 17, 19, 19-1, 21, 25, 31
		4	이로로 9번길 36(유창파크)		4	안장산로 32-1, 38 안장산로40번길 4-7, 4-6, 4-5, 4-4, 4-3, 4-2, 4-1, 2, 3, 40, 44, 44-1, 5, 5-1, 5-2, 5-3, 9-1, 9
	5	1	이로로 28-9, 28-7, 28-8, 28-6, 28-5, 28-3, 28-4, 28-2, 28-1, 28, 32, 32-2, 32-1 이로로 34번길 2, 2-1, 4, 4-1, 6-1, 6, 8-2, 8-1, 7, 5, 5-1, 3-3, 3-2, 3, 3-1, 1-1, 1, 14, 16, 34, 36, 8-3, 8	5	1	이로로9번길 6, 8, 14, 18, 18-1, 18-2, 18-3, 18-4, 22, 20-2, 20, 20-1, 21, 25, 22-2, 22-3, 22-1 이로로 21, 25 삼학로373번길 23, 25, 27, 12, 12-1
		3	이로로 9번길 14, 12, 18-4, 14-1, 16-1, 16, 18-2, 18, 18-3, 12-1, 12-1, 18-1, 20, 20-2, 28-9, 22-2, 22-3, 20-1 삼학로 373번길 27, 25 이로로 25		3	이로로 28, 28-2, 28-1, 28-3, 28-4, 28-5, 28-6, 28-7, 28-8, 28-9, 32-1, 32-2, 32, 34, 35 이로로34번길 2, 8-3, 8-2, 8-1, 8, 6-1, 6, 4, 4-1, 2-1, 1, 1-1, 3, 3-1, 3-2, 3-3, 5, 5-1, 7, 14, 16, 16-1
		4	이로로 18, 18-3, 18-4, 18-6, 28-1, 18-5, 18-6, 18-1, 18-2 이로로 34번길 8-3		4	이로로9번길 28-3, 28-1, 28-2, 28, 28-4 안장산로21번길 33 (유창파크아파트)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6	1	이로로 4번길 10 (구용해아파트 1동 101~510호)	6	1	이로로4번길 10-1(영신빌리지) 이로로4번길 10(구. 용해아파트)
		2	이로로 4번길 10 (구용해아파트 2동 101~510호)		2	이로로4번길 5, 3-2, 3-1, 3, 7 이로로 18, 18-1, 18-2, 14, 12, 10-3, 10-2, 10, 8, 6-1, 6, 5
		3	이로로 4번길 10 (구용해아파트 3동 101~510호)		3	송림로 64, 66-1, 66, 66-2, 66-3, 68, 68-1, 70, 72, 74, 74-1, 74-2, 76, 65, 67, 67-1, 69, 73 영산로 360, 360-1, 362 이로로 2, 2-4, 2-6, 2-14, 2-13 이로로4번길 2, 4, 4-1, 6
		4	이로로 4번길 10-1(영신빌리지 101~1008호, 상가), 10 영산로 346번길 11-2		4	이로로 3, 7 이로로9번길 3(이로초등학교) 송림로 82(팰리스빌)
	7	1	송림로 66-3, 64, 62, 68, 68-1, 70, 66-2, 66, 72, 74-2 이로로 2-14, 2-2	7	1	송림로 77-2, 77-3, 79, 81 영산로 370-1, 37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1, 2라인)
		2	이로로 2-6, 2-4, 2, 6-1, 10, 10-2, 10-3, 12, 14 송림로 74-1 이로로 4번길 22, 20, 19, 21, 21-1, 17		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3, 4라인)
		3	송림로 67, 73, 67-1, 69, 65, 73, 75, 77 영산로 360, 362, 360-1, 370		3	송림로 91, 91-1, 89, 91-2, 91-3, 91-4, 91-5, 91-6, 91-8, 91-7, 91-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3, 93-2, 95-1, 95-2
		4	이로로 2-2, 2-13, 8 이로로 4번길 2, 3, 3-1, 3-2, 4-1, 6		4	송림로 97(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8	1	이로로 9번길 3 이로로 7, 5, 3 송림로 104번길 10-1, 2, 4, 98-4, 6, 98-1 송림로 98, 98-3, 98-2, 100-1, 100, 100-5, 104-4, 100-3 삼학로 373번길 14-1	8	1	송림로 96, 98, 98-1, 98-2, 98-3, 98-4, 100, 100-1, 100-2, 100-3, 100-4, 100-5 삼학로373번길 16, 14, 12, 14-1, 6-3, 6-4 송림로104번길 12-1, 12, 10-3, 10-2, 10-1, 10, 8, 6, 4, 2, 3-3
		2	송림로 100-2 송림로 100번길 3-3 삼학로 373번길 6-3, 6-4, 10, 14, 12 송림로 104번길 10-2, 12-1, 10-3, 12, 8, 9, 11, 10, 6		2	송림로 104, 104-1, 106, 108, 110, 112, 112-1, 114, 114-1, 114-2 송림로104번길 1, 3, 3-1, 3-2, 3-3, 6, 9, 11 삼학로373번길 6-1, 6-2, 6-3, 6-4, 10
		3	송림로 104번길 3-1, 1, 3, 3-2 송림로 104-1, 108, 104-1, 106, 110, 110-1, 112, 112-1, 114-1, 114, 114-2 삼학로 373번길 6-2, 6-1, 6		3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103, 104
		4	송림로 97, 101-3, 95-2, 91-2, 101-5, 91-8, 103-1, 105, 103, 101-4, 95, 95-1, 93-2, 95-1 쇳나루로 4, 8, 8-1, 9, 7, 5-1, 5-2, 5, 1 삼학로 388, 390 이로로 8		4	삼학로 388, 390, 386 쇳나루길 1, 4, 5, 5-1, 5-2, 7, 8, 8-1, 9, 11
		5	송림로 95-2, 91-2, 8, 7, 10, 89, 91-1, 91, 91-12, 13, 14, 11, 9, 93-2, 91-15, 93, 93-1, 91-5, 6, 4, 91-3, 85, 81, 79, 81-1, 77-2, 83 영산로 370-1			폐지

□ 부흥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흥동	17	6	신설	17	6	하당남부로 107 (옥암동, 하당원캐슬오션파크)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2026년 건강행태개선사업(운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보건소(건강정책과)에서는 2026년도 건강행태개선사업(운동)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목 포 시 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종 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1명	• 건강행태개선사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협조 등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3. 3. ~ 2026. 11. 30. (9개월)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09:00 ~ 18:00)

다. 보수수준 :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준함

- 월보수액 : 2,367,2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

3. 응시자격

가. 운동처방사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전문, 생활),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목포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두고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가점대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운동처방관련 건강증진업무 및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4. 채용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검증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 목포시청 홈페이지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2. 2.(월) ~ 2026. 2. 10.(화)

다. 접수기간 : 2025. 2. 9.(월) ~ 2025. 2. 10.(화)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09:00~18:00 내 (중식시간 12:00~13:00제외) 신분
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접수 ※ 우편, 대리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 목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바. 전자우편접수: ssyy7840@korea.kr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 에 한하여 유효함

6.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합격자 발표 : 2026. 2. 11.(수)

나. 2차 면접시험 : 2026. 2. 12.(목) 예정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1배수일 경우, 재공고 생략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13.(금) 예정

※ 상기 채용일정은 목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공고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cm)

나. 이력서 1부. (붙임 2)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붙임 3)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바. 기타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사.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자. 신원진술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자격 탈락

8.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합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결과로 최종집계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경력순으로 우선 채용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합격자가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5일 이내 근무의사가 없을 경우 별도 모집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사.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 (☎270-8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 서류 양식 각 1부. 끝.

응시원서

목포시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행태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목포시장 귀하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응시번호	2026-	성명	(한글)			사 진 반명함판 (3.5cm × 4.5cm)
			(한자)			
채용분야	건강행태개선사업 기간제 근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자격· 면허 종류						
주소	시 로 (자택전화 : 핸드폰:)					
학력 (최종)	년 월 일	학교(과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년 월 일	대학교(원)(과년)	졸업, 졸업예정, 재학, 수료, 중퇴			
주요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담당업무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응시번호	2026 -	응시표			사 진 반명함판 (3.5cm × 4.5cm)
채용분야	건강행태개선사업 기간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것
2.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3. 최종학력: 최종졸업 등 연월일과 학교명, 전공학과를 정확히 기재하고
졸업·졸업예정·수료·재학 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 할 것,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 대학을 기재할 것
4. 경 력: 경력이 있을 경우 주요 경력사항에 대해 기재(1년 이상)
5.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부착

[서식2] 이력서

이 력 서

사 진
(3.5cm×4.5cm)

성 명

(한 글)

(한 자)

주 소
(연락처)

새주소 로 기입

① 자택전화() ② 이동전화 ()

이 력 서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최종학력부터 기재	00.00(년,월)		00.00(년,월)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최종경력부터 기재 00.00~00.00(년,월)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0000. 00. 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목포시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건강행태개선) 기간제근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 과정, 가족관계, 좌우명, 학교 및 사회생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실적 등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포시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건강행태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목포시보건소(건강증진과)
이용 목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행태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6. . .

성 명

(서 명)

목포시장 귀하